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비 책정

단순한 부모의 수입 외에 경제적인 능력을 보고 결정

자녀는 부모의 부와 생활 수준을 공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양육비 지급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양육비 지급에 따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자녀 양육비 책정이라 하겠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은 부모가 행해야 할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녀 부양의 의무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녀 부양의 의무는 다달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양육비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법원은 양육비 책정은 물론 그 집행에 있어서도 최대의 권한을 보유하고 행사하니, 이는 미국법이 그 만큼 미성년 자녀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섬을 보여주는 일례라 하겠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은 자녀 양육비 책정에 있어, 부모의 실제 수입은 물론, 개인의 능력, 생활 수준, 세금 보고에 나타나지 않는 각종 경제적·금전적 혜택, 주식 및 각종 저축성 투자, 개인 은퇴 연금, 유산 상속으로 인한 개인 사유재산 등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누리는 모든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한다. 또한 모든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동등하지 않으므로 개개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따른 필요 사항을 고려하여 자녀 양육비를 책정한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학적 공식으로 양육비를 책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산출된 양육비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쪽이 법정 논쟁을 통해 판사를 설득시켜야 한다.

한인 부모의 경우,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동안만큼은 자식을 위해 산다 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아빠는 아빠대로 자식 때문에 일하고 돈을 번다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고 흔히 말하며 또 그러한 가족관과 생활관을 성실히 이행하는 데서 자긍심을 느끼고 이민 생활의 애환을 이겨 나간다. 하지만 남남이 되는 이혼 무렵에는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내야 하는 양육비를 놓고 머리가 터지게 싸우니 아이러니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혼 과정에서 "헤어지는 마당에 내가 누구 좋으라고 돈을 줘? 어떻게 번 돈인데, 나도 살아야지. 애들 몫은 애들 크면 내가 어렵히 알아서 챙겨주지, 누구 주고 가겠어?"라는 것이 다수의 사고 방식이다. 한마디로 양육비가 자녀에게 간다는 생각보다는 그 돈을 헤어지는 배우자에게 준다는 생각에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은 동서양을



신혜원(가정법 전문 변호사)

막론하고 공동된 인간의 기본 감정인 듯하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도 자녀는 부모의 부와 생활 수준을 공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양육비 지급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양육비 지급에 따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부모의 수입이다. 양육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는 수입이란 단순히 세금 보고에 드러나는 W2나 1099식의 노동에 대한 보수만이 아니다.

A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평생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결혼해서도 내내 가진 재산으로 발생하는 이자 및 투자 배당금으로 두 딸을 공주처럼 키웠고, 부동산 일부나 진기한 골동품 및 그림을 팔아 호화롭게 그치지 않는 생활을 누렸다.

그런 A씨가 이혼을 하면서 목청 높여 주장하기를, "나는 직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 부모가 남긴 재산을 계속 축내며 예전의 호화스러웠던 생활 수준을 지속시키란 말입니다. 이제는 내 딸들도 평범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A씨는 자신이 받는 이자와 투자 배당금만을 자신의 수입으로 간주해 가이드라인이 산출하는 금액이 양육비로 책정될 것을 주장했고, A씨의 부인은 딸들이 다니던 사립 학교와 과외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A씨의 부동산의 일부를 매매해서 양육비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A씨가 결혼 기간 중, 이자나 투자 배당금으로만 생활하지 않았고 재산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처분해 생활비의 원천으로 사용했다고 판명, A씨가 소유한 40에이커의 땅을 팔아 청기적으로 배당금이 나오는 방식으로 투자하여 양육비로 사용할 것을 명령. 어이없어하는 A씨에게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에게는 40에이커의 땅 하나쯤 없어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지만, 당신 딸들에게는 이것을 판 돈이 부모의 이혼으로 빚어지는 생활 수준의 현저한 변화에서 오는 타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형편과 능력이 되면,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경제적 고통을 줄여주어야지요." 무덤으로 지고 갈 수 없는 땅덩어리, 살아서 써야 할 곳에 쓰라는 얘기인 듯하다.

(위의 기사는 최근의 가정법 판례를 필자가 본 기사와 지면에 맞게 각색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213-251-5401